

『인권연구』 7(1): 133-166.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1): 133-166.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1.133>

[일반논문]

##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인식과 시사점

: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의 IPA 분석\*

김 중 우\*\*

한글초록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분류한 인권 영역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인권의 현 상황을 진단한다. 연구자는 수정된 IPA(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분류한 18가지 인권 영역의 인식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1) 현재 수준 유지가 필요한 영역은 ‘사상·양심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나타났다. 반면, 2) 집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으로 나타난다. 3)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은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환경권’으로 나타났으며, 4) 과잉투자를 지양할 영역은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문화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사회권 보장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이 집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우선순위를

\*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연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전달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교수(copy333@daum.net)

두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인권, 자유권, 사회권, 인권의식실태조사, 수정된 IPA

---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자료와 방법
- IV. 결과
- V. 논의: 개선 필요 영역에 관한 제언
- VI. 결론

## I. 서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근간으로, 그 보장 수준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인권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전반에 걸쳐 개선의 과제가 상존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가 대두되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요구가 증대되는 등 새로운 인권 의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인권 영역의 현주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의 인권 인식 지형을 진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 주요 인권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체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인권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각 권리 영역에서의 중요도-만족도 괴리는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지점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정된 IPA 기법을 활용하여 인권 영역별 잠재적 중요도와 인지된 만족도의 대응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지금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에 대한 입체적 진단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를 포함하여 인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곽귀병·김대욱·조홍진, 2018). 여기서 민주주의는 제도와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김주형·서현수, 2023)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도적 차원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박상필, 2012; 민세명, 2024), 문화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확산 및 일상의 민주화를 요청하는 흐름이 확장하는 가운데(이상인, 2008; 권효림, 2015; 박선경·홍하은, 2023) 인권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함께 증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측정, 평가하려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sup>1)</sup> 및 주요 정부 기관<sup>2)</sup>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지표(human rights index)를 생산하고 있다. 지자체 수준에서도 전반적인 인권 상황<sup>3)</sup>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국가승인통계(제129001호)로 「인권 의식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선거 연령 하향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밖에 비정기 조사 형태로 장애, 아동, 빈곤, 형사피의자 등 여러 영역의 인권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조사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비정기 조사도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2024년 4월 기준)에서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 등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제정한

등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인권에 관한 기존의 조사 및 연구들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조직 수행 측면에서의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인권 영역 전반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인권 영역의 현황에 대한 인식을 심도 있게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권 영역 전반을 구성하는 자유권, 사회권 항목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인권 영역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유권(시민·정치적권리)과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권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권 영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라는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권 영역별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수정된 IPA(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도입하여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를 작성함으로써,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인권 영역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인권 영역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수정된 IPA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연구자료와 방법을 설명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변수를 소개한다. 셋째, 인권 영역별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 결과를 제시한 이후 중점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논의한다. 마지

---

지자체는 「학생인권실태조사」와 같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인권의 영역들

인권은 하나의 총체적 목록이나(조효제, 2015), 세계인권선언(1948)이 결의된 이후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은 인권의 규범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해 왔다. 자유권은 오랜 기간 인권 담론의 중심에 있었던 반면, 사회권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평가된다(Vasak, 1977; Donnelly, 2013).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자유의 침해를 금지하며 국가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측면이 두드러지나,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권리의 측면이 강하다. 즉 자유권이 소극적 권리라면,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로 볼 수 있다(Sepúlveda and Magdalena, 2003). 이런 인권의 이분법은 1966년 UN이 채택한 자유권규약(ICCPR)과 사회권규약(ICESCR)을 통해 규범적으로 확립되었다(Ssenyonjo, 2016). 자유권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사회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는 냉전 시대 이념 대립의 산물이기도 했다(Alston and Goodman, 2013).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로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Donnelly, 2013). 자유권은 전통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로 분류됐으며, 역사적으로 시민혁명과 입헌주의 발달과정에서 확립된 근대적 권리의 대표적 유형이다(Ishay, 2004). 자유권은 다양한 유형의 권리들을 포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체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

유 등을 들 수 있다(Nickel, 1987). 신체의 자유는 불법적인 체포·구금·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내면세계인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아우른다(Barendt, 2005). 자유권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 영역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해 소극적인 불간섭을 요구하는 방어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Fredman, 2008).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Young, 2008). 사회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로 분류되며, 20세기 들어 복지국가 이념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Minkler, 2013).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여 다양한 권리들을 포함하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Ssenyonjo, 2016). 예를 들어,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근로권은 일할 기회를 제공받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노동3권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사회보장권은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구체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사회권의 보장 수준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연관성 및 불가분성이 강조되고 있다(Koch, 2009).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확인하였다(UN General Assembly, 1993). 이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자유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가

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사회권의 실현이 자유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 등이 강조되며 자유권/사회권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Koch, 2005; Nickel, 2008). 이는 권리가 더 이상 개별적 항목으로 이해되거나, 병렬적, 연속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와 상통한다(박주원, 2013). 다만 이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서 활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실태조사」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분류<sup>4)</sup>에 근거하여,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권리 항목을 분류하고 항목별 세부 권리 영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려 한다. 다만, 전반적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할 것이다.

## 2. 인권 상황의 평가

한국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전개됐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을 명시한 이래,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신장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관심이 커졌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인권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2011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이후 범정부 차원의 인권 증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

4)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반영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정책의 프레임워크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영역별 과제를 설정하며 8가지 사회적 지향점과 세부 권리 영역을 배치하고 있다. 8가지 지향점은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조사에서 포함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18개 항목은 1번부터 5번 지향점에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8).

사회 각 영역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새로운 유형의 인권 이슈 대응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도 인권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된 접근법으로는 크게 포괄적, 복합적 접근과 특정 영역 중심의 접근이 있다. 포괄적, 복합적 접근은 광범위한 인권 영역을 아우르는 지표들을 종합하여 단일한 지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평등과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Measurement Framework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 간 비교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지표 선정과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주관성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Rosga and Satterthwaite, 2009).

반면 특정 영역 중심의 접근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개별 권리 영역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에서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정치적 테러 척도(Political Terror Scale)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Cingranelli and Richards, 2010),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에서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지니계수 등의 지표가 사용되곤 한다(Fukuda-Parr et al., 2015; Minkler, 2013). 건강권 측정을 위한 건강수명(HALE), 교육권 측정을 위한 교육성취도 등과 같이 개별 권리에 특화된 지표의 활용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접근은 구체적 권리의 향유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Nickel, 2008).

이처럼 해외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과 더불어 인권 현황을 진단하고 이행 수준을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국가 단위의 거시지표

를 활용해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미시적 인권 인식을 포착하기 위한 이 연구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부터 국가승인통계인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인권 연구와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조사가 누적되면 인권 인식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III. 자료와 방법

####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2024년 1월 기준)에 공개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인권의식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인권 전반에 관한 조사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 인권교육 및 증진 방안을 파악하여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 조사는 2019년에 「국가인권실태조사」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2020년부터 「인권의식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한 2022년 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대상 표본 추출을 통해 확보한 만 18세 이상 국민이다. 표본추출틀은 2020년 통계청 등록센서스 조사구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층화추출을 통해 구성되었다. 2022년 조사에서는 9,043가구의 16,148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로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와 웹-모바일 방식의 온라인 조사

가 병행되었다.

## 2. 방법

분석을 위해 먼저 인권 영역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자유권, 사회권)를 활용하여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권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개념적 구분이 지니는 한계를 전제로 한 잠정적 분류임을 미리 밝혀둔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양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권리 항목들 역시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 영역별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에는 수정된 IPA(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였다. Deng(2007)이 제안한 수정된 IPA(revised IPA)는 기존의 전통적 IPA 방법을 보완하여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비선형 관계를 고려한 분석 기법이다. IPA는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현상 유지가 필요한 영역 등을 구분하여 공정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방법이다. 이후 제조업 외에도 정책 평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IPA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분면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반면, 수정된 IPA는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비선형 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한다(Deng, 2007; Deng, Kuo and Chen, 2008). 이 연구에서는 Deng(2007)의 수정된 IPA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중요도와 만족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측값 등을 처리한다. 여기서 Deng(2007)의 수정된 IPA는 항목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사이의 편상관계수를 통해 잠재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항목별 만족도는 직접 측정한 값을 사용하기에 명시적 만족도로

지칭한다. 이 분석에서는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분류한 18가지 인권 영역별 인식에 관한 문항<sup>5)</sup>을 인권 영역에 대한 성취 수준으로 정의하고 이를 명시적 만족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잠재적 중요도와 명시적 만족도 간의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중요도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 인권 영역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점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변환한다. 이후 자연로그로 변환한 명시적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sup>6)</sup> 사이의 편상관분석을 통해 잠재적 중요도를 산출한다. 수정된 IPA의 장점은 수정 모형을 통해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비선형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인식을 직접 묻는 문항이 부재한 관계로, '전반적 만족도'를 잠재적 중요도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적 중요도가 -1에서 1 사이의 상대적 값으로 표준화되어 나타난다. 잠재적 중요도와 인지된 만족도의 관계를 더욱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요도 문항을 마련하는 등 조사 설계 차원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별 인권 영역의 명시적 만족도와 잠재적 중요도 점수를 바탕으로 2차원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이후 명시적 만족도와 잠재적 중요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임계값을 설정한다. 수정된 IPA에서 매트릭스는 잠재적 중요도(y축)와 명시적 만족도(x축)의 임계값을 두 축으로, 4분면으로 구성되며, 각 분면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 5) 이에 해당하는 조사지의 문항은 “문항9번: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이며, 세부문항은 다음 18개 인권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주거권, 사회보장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 6) 이에 해당하는 조사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12번: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1> Deng(2007)의 수정된 IPA(revised IPA)의  
사분면에 따른 의미

사분면	중요도-만족도 수준	의미
제1사분면	중요도 높음, 만족도 높음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영역 (Keep up the good work)
제2사분면	중요도 높음, 만족도 낮음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 (Concentrate here)
제3사분면	중요도 낮음, 만족도 낮음	전반적인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 (Low priority)
제4사분면	중요도 낮음, 만족도 높음	과잉투자 지양 영역 (Possible overkill)

매트릭스 상에서 18가지 인권 영역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2사분면에 위치한 인권 영역은 집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식별되며, 이를 중심으로 인권 증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16,148)

문항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인권 영역	신체의 자유	1	4	3.08	0.515
	사상·양심의 자유	1	4	3.03	0.587
	종교의 자유	1	4	3.25	0.638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1	4	3.00	0.590
	집회·결사의 자유	1	4	2.98	0.615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1	4	2.79	0.650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1	4	2.81	0.644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	4	2.89	0.623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1	4	2.86	0.588
	주거권	1	4	3.02	0.549
	사회보장권	1	4	2.85	0.645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1	4	3.00	0.601
	노동권	1	4	2.81	0.649
	건강권	1	4	3.03	0.595

	교육권	1	4	3.11	0.586
	안전권	1	4	2.91	0.612
	환경권	1	4	2.88	0.607
	문화권	1	4	2.96	0.582
전반적 평가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	1	4	2.70	0.560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인권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총 18가지의 인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앞선 PCA 결과가 보여주듯, 기존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은 18개의 인권 영역별로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지에서는 보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sup>7)</sup> 본 분석에서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매우 존중된다'를 4점으로 하는 방식으로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잠재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반적 만족도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마찬가지로 보통을 배제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다변량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는 통계적 기법이다. 먼저, 데이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정을 수행하였다. KMO 측도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KMO 측도는 0.93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

7) 매우 존중된다(1점)/존중되는 편이다(2점)/존중되지 않는 편이다(3점)/전혀 존중되지 않는다(4점)

8) 매우 심각하다(1점)/다소 심각하다(2점)/별로 심각하지 않다(3점)/전혀 심각하지 않다(4점)

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chi^2$ )값은 92070.786, 자유도(dgree of freedom)는 153, 유의확률( $p$ )은 0.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교회전(varimax)을 적용한 성분행렬에서 총 3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다. 각 주성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주성분은 서로 다른 인권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분1'은 주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 영역을 나타내며, 주거권, 사회보장권, 복지서비스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의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분 1이 사회권적 성격의 인권 영역을 대표함을 시사한다. '성분 2'는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분2'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 영역을 대표함을 의미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분 3'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의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분 3이 법적·절차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 영역을 대표함을 시사한다. 법적·절차적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되어 있다(Bingham, 2010). 결과 해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분을 '그룹'으로 표기하였다.

## IV. 결과

### 1. 권리 영역별 유형과 인권 상황 인식

이상의 절차를 통해 분석한 결과, 먼저 자유권과 사회권 분류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p < .001$ ). 그러나 <표 3>에서 보듯 일부 항목의 경우 양 범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개념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범주 분류의 신뢰성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1번 성분은 주거권, 사회보장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권리로,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이 적절하게 분류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2번 성분은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2성분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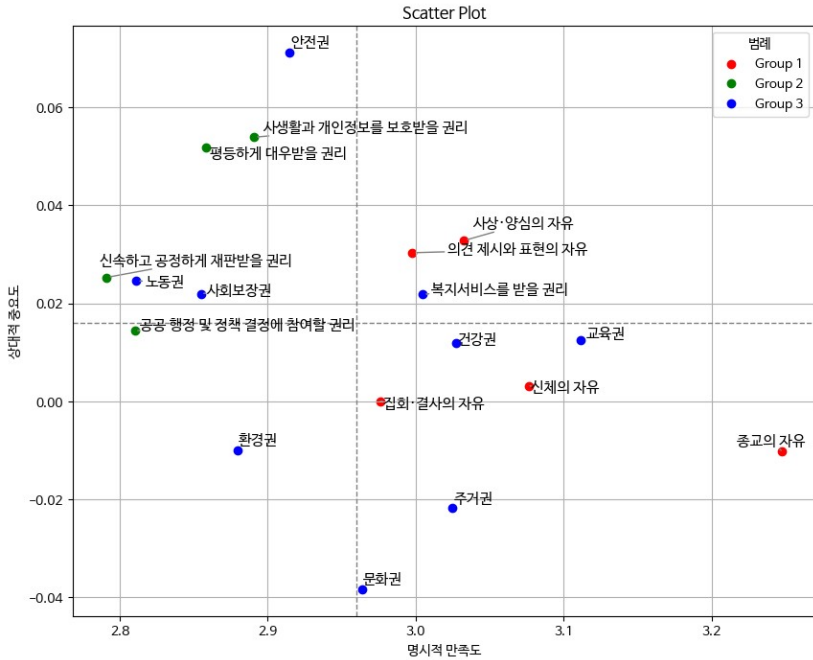
제3번 성분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이 높은 부하량을 보인다. 이들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3성분은 자유권 범주에 해당하나,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결합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들 권리가 상대적으로 다차원적 속성이 있거나, 전통적인 자유권·사회권의 이분법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새로운 권리 영역

에 해당함을 시사하는 바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권리 영역이 경제적·사회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구분되나, 자유권과 사회권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권리도 존재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권 영역에 관한 인식이 크게 세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은 이를 통해 수정된 IPA에서 차원별 평균 만족도와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3> 인권 영역별 만족도-중요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항목	명시적 만족도	상대적 중요도	성분 (그룹)	신뢰도
신체의 자유	3.077	0.003	2	0.751
사상·양심의 자유	3.033	0.033		
종교의 자유	3.247	-0.010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2.997	0.030		
집회·결사의 자유	2.976	0.000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2.791	0.025	3	0.769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2.810	0.014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2.891	0.054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2.859	0.052		
주거권	3.025	-0.022	1	0.844
사회보장권	2.855	0.022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3.004	0.022		
노동권	2.811	0.025		
건강권	3.027	0.012		
교육권	3.112	0.013		
안전권	2.915	0.071		
환경권	2.880	-0.010		
문화권	2.964	-0.038		
(평균값)	2.960	0.016		



[그림 1] 인권 영역별 만족도-중요도 측정을 위한 수정된 IPA 분석 결과

<표 4> 수정된 IPA 분석을 통해 분류한 인권 상황 인식

사분면	인권 영역
<제1사분면> 지속 유지 필요 영역	(그룹1)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룹2) 사상·양심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제2사분면> 집중 개선 필요 영역	(그룹1)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 (그룹3)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제3사분면> 낮은 우선순위 영역	(그룹1) 환경권 (그룹3)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4사분면> 재분배 필요 영역	(그룹1)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문화권 (그룹3)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위 분석에서는 수정된 IPA 기법을 활용하여 인권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y축(세로)에 상대적 중요도를 배치하고, x축(가로)에 명시적 만족도를 배치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IPA는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성과 수준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자원 배분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는 분석 도구이다(Abalo, Varela and Manzano, 2007; Deng, 2007). IPA 매트릭스는 세로축을 중요도, 가로축을 만족도로 하는 2차원 좌표평면으로 구성되며, 각 속성은 좌표평면의 점으로 표현된다. 매트릭스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4개의 사분면으로 나뉘는데, 각 사분면은 속성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전략적 함의를 나타낸다(Abalo et al., 2007). 사분면은 x축(명시적 만족도), y축(상대적 중요도)의 평균을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구분한다.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 제2사분면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집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 제4사분면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영역을 의미한다. IPA 모형에서 전통적으로 제4사분면은 과잉투자 지양 영역(possible overkill)으로 해석되어 왔으나(Martilla and James, 1977),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영역의 권리 보장 수준이 일정 수준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재분배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제1사분면에 위치한 ‘사상·양심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의 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사분면에 배치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 등의 영역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3사분면에 있는 영역들은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환경권’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문화권’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투입 자원을 재분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IPA 분석은 사회적 권리의 보장 실태를 진단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사생활 보호’, ‘평등권’, ‘공정한 재판’,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다. 반면, 일부 자유권과 사회권은 전반적으로 중요도 대비 만족도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2. 인권 영역별 상황 인식과 정책 우선순위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도 도출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 사회경제적 변화, 기술 발전 등 한국 사회의 장기 지속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범유행과 같은 거시적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사분면의 특징과 사분면에 배치된 인권 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제1사분면에 위치한 인권 영역은 중요도도 높으나, 만족도도 높게 측정되어 현재의 수준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여기에는 ‘사상·양심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등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온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사회운동의 역할이 컸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윤성석·이삼성, 2002; 정태석, 2013). 또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는 복지 제도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이는 한

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 복지 제도의 저발전 상황(우명숙, 2007)과 그에 따른 복지 효능에 대한 체감이 적었던 상황에서 민주주의 이행을 거치며 의료보험 확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보장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윤홍식, 2018)하며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 또한 조사 시점에서 인접한 시기에 있었던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재난소득과 같은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출이 시도되는 등 사회보장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었던 점(남윤민, 2021)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래 집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사회보장권이 포함되어 있듯, 아직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제2사분면에 위치한 영역들은 높은 중요도 인식에 비해 낮은 만족도가 측정된 항목으로, 집중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영역에 배치된 권리 영역이 우리 사회 안에서 주요 권리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사안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황성기, 2018). 특히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 등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서 직면한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영향받은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김선호, 2020; 오주연·서우중, 2021).

한편, 유사한 범주로 묶인 ‘평등권’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요구는 모두 중요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권리’의 낮은 만족도는 사법절차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초래한 취약한 접근성(장수영·이덕환, 2015), 인권 친화적 태도의 미비에 따른 부정적 인상(이정은, 2020)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계층에 따라 양극화하고 있는 현상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김상현, 2018).

그리고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한 불만족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해 심화된 고용 불안정과 양극화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윤도현, 2003). 특히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는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체제의 대표적 사례이다(이호용·손영화, 2013). 이는 앞서 살펴본 평등권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높은 편이며(정성진·정구현, 2022),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박영채·이승윤, 2023)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국가이다(이용우·이미진, 2014). 교육 기회 역시 형식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주요 영역이기도 하다(김위정·김양분, 2013).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사회 이동성의 제약은 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권’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이나, 만족도는 낮은 항목으로 나타난다. 안전권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세월호 참사, 코로나 19 범유행 등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역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에 따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책무 이행에 대한 요청 등과 연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철, 2021; 김종우, 2021).

셋째, 제3사분면의 ‘공공 행정 참여권’과 ‘환경권’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권 개념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 행정 참여권’은 민주주의의 중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시민의 공적 의사 결정에 관한 정보 접근 등을 통해 정치적 구성원으로서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한국은 제도화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립된 비교적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역시 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본격 제도화되어 한국 사회 구성원의 공공 행정 참여 경험은 서구 사회에 비

하여 짧은 것이 현실이다(김남수, 2003; 장원경·이선우·김광구, 2018). ‘환경권’의 경우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친환경 가치관의 사회적 확산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후 위기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환경권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일반화된 한국에서, ‘참여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다른 권리 항목에 비하여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권’은 바작이 제3세대 인권으로서 연대의 권리를 제안한 이후(Vasak, 1977) 집단 간,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가 주목받기 시작하며 오늘날 국제 사회의 인권 담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주영, 2017).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권’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효제, 2020; 김왕배, 2021).

넷째, 제4사분면에 위치한 권리들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 항목으로, 권리의 내용들이 비교적 잘 보장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보호권’의 경우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2022년 과기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62.8%)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2). 이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문화권’ 등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기에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 중에서 ‘종교의 자유’와 ‘문화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종교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권리 영역별 만족도에서 높은 영역 중 하나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세속주의 경향에 의한 효과일 수 있다. 한국의 종교 인구와 종교적 믿음의 강도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종교 그 자체가 정치적 의제로 전면부 부상하는 경우는 현대사에서 드문 현상이었다(윤승용, 2015; 최지영·이명진, 2022).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은 종교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의제로 주목받기 어려운 세속화의 경향으로 추정된다.

‘문화권’은 모든 권리 영역 중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가진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한 축을 구성하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 중요도가 낮은 권리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문화를 권리로 보는 인식이 미비함이 야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화권’은 사회권의 하나로, 모든 사람은 문화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국가는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문화권’이 다문화 정책 및 시민권, 집합적 권리와 관련된 논의(김현미, 2015; 김미영, 2021) 및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문화 환경 불평등과 균형발전 문제(김창규, 2014)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차원에서 가장 큰 점수를 보인 항목을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권리로 평가된 항목은 ‘안전권’이었다. ‘안전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로 평가된 것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단계설과도 정합성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 구조를 이루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상위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에 이어 두 번째로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므로(Maslow, 1943), ‘안전권’이 여타 권리에 선행하는 중요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영역은 ‘문화권’이었다. ‘문화권’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권리로 인식된 것은 문화 활동이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 단계의 욕구와 관련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화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족도의 경우, 가장 큰 만족도 점수를 보인 영역은 ‘종교의 자유’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의 자유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함께 대표적인 근대적 자유주의의 핵심 권리로서, 민주주의와 가치 다원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신장되어 온 경향이 있다.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노동권’으로 나타난다. ‘노동권’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는 노동 현실에 내재한 문제점을 바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노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노동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 소득 불평등, 빈곤,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권’에 대한 높은 불만족도는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노동 관련 현안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 V. 논의: 개선 필요 영역에 관한 제언

한국 사회의 인권 영역별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유권에 비해 사회권 영역에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의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시사하는바,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집중 개선이 필요한 인권 영역을 위한 과제 및 제언은 그 자체가 중점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본 연구의 범주를 넘어서는 만큼 이 항목에서는 영역별로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로 한정한다.

첫째,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급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평등권 보장 및 차별 금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와 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 교육, 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법관 인사제도 개선, 재판의 투명성 제고 등 사법 개혁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재판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소송 구조 제도 활성화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권 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 고용 안정성 제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범위 확대, 급여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연금, 건강보험 등 핵심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빈곤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탈빈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안전권 보장 및 위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시설 안전 점검 및 보장,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안전 교육 및 훈련 내실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식품, 의약품,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집행력 제고가 요구된다.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안 시스템의 선진화, 범죄 예방 활동 강화,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 VI. 결론

이처럼 본 연구는 수정된 IPA 기법을 활용하여 인권 영역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세부 권리 항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권리 영역으로는 ‘사상·양심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확인되었다. 반면, 2) ‘안전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영역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점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해당 권리 영역에서의 인권 신장 수준이 사회 구성원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안전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는 반면, ‘문화권’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노동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면서도 ‘노동권’ 보장 수준은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

간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문화권’과 같이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권리 영역에 대한 개념 확립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사회적 권리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방향 수립에 유용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안전권’ 보장을 최우선적 과제로 상정하는 한편, 만족도는 가장 낮은 ‘노동권’ 신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권을 포함한 상위 단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장기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집중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인권 항목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인권 과제들은 입법, 정책, 제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권 인식의 차이 등 인구학적 요소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인권 의제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보완하고, 각 인구집단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경험의 차이가 인권 인식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향후 인권 정책 수립 시, 이 같은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요청된다. 둘째, 2022년 조사 자료만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영역별 인식 동향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거시적인 역사적 사건이 존재할 경우, 행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거시적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 (Giddens, 1984; Coleman, 1994), 이 점이 인권 영역별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의 횡단적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문화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참고문헌

- 강철.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연구』 24(2): 71-102.
- 곽귀병·김대욱·조홍진. 2018.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평가하는가?” 『한국사회학』 52(1): 117-151.
- 권효림. 2015. “결사체주의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민주주의적 의의: 마포파티(Mapo Part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5): 151-180.
- 김남수. 2003. “지방행정 변화와 시민참여 발전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17(1): 53-75.
- 김미영. 2021.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다문화콘텐츠연구』 36: 45-82.
- 김상현. 2018.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과제』 2018: 4132-4364.
- 김선호. 2020. 『코로나 19 관련 시민 인식 조사 : 집회 및 시위제한과 개인 정보수집은 “방역을 위한 필수조치”』.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왕배. 2021. ““사회적인 것”의 재구성과 ‘비(非)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 『사회와 이론』 40: 7-46.
- 김종우. 2021. “코로나19와 권리 제한의 답론: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대중매체 담론과 국가 책무성 논의.” 『인권연구』 4(2): 55-86.
- 김주형·서현수. 2023. “민주적 혁신의 정치이론: 역동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한국정치학회보』 57(1): 7-32.
- 김창규. 2014.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공법연구』 42(4): 147-176.
- 김현미. 2015. “연구논문: 귀화 이주민과 문화적 권리.” 『한국문화인류학』 48(1): 89-118.
- 남윤민.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2): 177-204.
- 대한민국정부. 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대한민국 정부.

- 박상필.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7: 162-191.
- 박선경·홍하은. 2023. “각자의 민주주의? 한국인의 민주주의 구성개념과 민주주의 만족도 평가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19(2): 5-34.
- 박영채·이승윤. 2023.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한국 청년의 불안정노동 분석: 헤도닉 가중치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50(3): 31-59.
- 박주원. 2013.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현상과인식』 37(4): 17-38.
- 오주연·서우중. 2021.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의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10): 49-61.
- 우명숙. 2007.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한국사회학』 41(3): 154-185.
- 윤도현. 2003.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의 모색.” 『한국사회학』 37(1): 51-66.
- 윤성석·이삼성. 2002.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주의 발전.” 『한국동북아논총』 7(3): 183-217.
- 윤승용. 2015. “연구논문 : 한국종교, 30년간의 변화와 종교사적 과제.” 『종교문화비평』 27: 189-227.
- 윤홍식. 2018. “민주주의 이행기 한국 복지체제, 1980~1997.” 『한국사회복지학』 70(4): 37-68.
- 이상인. 2008.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일상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0(1): 95-126.
- 이용우·이미진. 2014.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노인빈곤 심각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8: 291-318.
- 이정은. 2020.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의 인권친화적 태도: 법정 모니터링을 통한 인상분석을 중심으로.” 『인권연구』 3(1): 1-31.
- 이주영. 2017.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10(2): 33-57.
- 이호용·손영화. 2013.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법과 정책연구』 13(4): 1469-1494.
- 장수영·이덕환. 2015.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360.
- 장원경·이선우·김광구. 2018.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 연구.” 『저스티스』 166: 257-300.
- 정성진·정구현. 2022.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계급적 분석.” 『경제와 사회』 134: 100-141.
- 정태석. 2013.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 『시민사회와 NGO』 11(2): 3-40.
- 조효제. 2015.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서울: 교양인.
- 조효제. 2020. 『탄소사회의 종말』. 광주: 21세기북스(북이십일).
- 최지영·이명진. 2022. “한국인의 종교적 믿음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사회학』 56(4): 145-165.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2. 『202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세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황성기. 2018. “디지털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 『헌법학연구』 24(3): 1-38.
- Abalo, Javier, Jesús Varela, and Vicente Manzano. 2007. “Importance values for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 formula for spreading out values derived from preference ranking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2): 115-121.
- Alston, Philip, Ryan Goodman and Henry J. Steiner. 2013. *International Human Rights: Text and Materi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endt, Eric. 2005. *Freedom of Spee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ngham, Tom. 2010. *The Rule of Law*. London: Penguin UK.
-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 2010. “The Cingranelli and Richards (C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Human Rights Quarterly* 32(2): 401-424.
- Coleman, James S. 1994.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ng, Weijaw. 2007. “Using a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pproach: The case of Taiwanese hot springs tourism.” *Tourism Management* 28(5): 1274-1284.
- Deng, Weijaw, Ying-Feng Kuo, and Wen-Chin Chen. 2008.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ree-factor theory and benchmarking.”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28(1): 37-51.
- Donnelly, Jack. 201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Fredman, Sandra. 2008. *Human Rights Transformed: Positive Rights and Positive Du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da-Parr, Sakiko, Terra Lawson-Remer, and Susan Randolph. 2015. *Fulfilling Social and Economic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shay, Micheline R. 2004.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lliffe, Ian T. 200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New York: Springer.
- Koch, Ida Elisabeth. 2005. "Dichotomies, trichotomies or waves of duties?" *Human Rights Law Review* 5(1): 81-103.
- Koch, Ida Elisabeth. 2009. *Human Rights as Indivisible Rights: The Protection of Socio-Economic Demand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Leiden: Brill.
- Martilla, John A. and John C. James.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aslow, Abraham Harold.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inkler, Lanse. 2013. *The State of Economic and Social Human Rights: A Global Overvi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kel, James W. 1987.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ickel, James W. 2008. "Rethinking Indivisibility: Towards a Theory of Supporting Relations between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30(4): 984-1001.
- Rosga, AnnJanette, and Margaret L. Satterthwaite. 2009. "The Trust in Indicators: Measuring Human Rights."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2): 253-315.
- Sepulveda Carmona, Magdalena. 2003.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twerpen: Intersentia.

Ssenyonjo, Manisuli. 2016.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Hart Publishing.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June 14-25, 1993. UN Doc. A/CONF.157/23.

Vasak, Karel. 1977. "A 30-year struggle; the sustained efforts to give force of law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ESCO Courier* 30(11): 28-29, 32.

Young, Katharine G. 2008. "The Minimum Core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 Concept in Search of Content."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3: 113-175.

<Abstract>

**Percep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n Society  
: Evidence from the 2022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Kim, Jongwoo\*\*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n society using data from the 2022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researcher evaluated the perception of eighteen human rights areas classified in the data using the Revise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veals that 1) the areas requiring current level maintenance ar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 right to receive welfare services. In contrast, 2) areas requiring focused improvement are the right to privacy,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right to a fair trial, right to work,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3) Areas with relatively lower priority are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4) Areas to avoid overinvestment ar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 Research Professor, Sociology, Yonsei University(copy333@daum.net)

health, right to education,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ecessity of ensur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s prominently recognized in the percep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n society.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makers should prioritize areas requiring focused improvement and consider policie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Keywords: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revised IPA